

구분	주요 내용	조문 (일몰기한)
① 신탁관련 지방세 감면 특례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목적) 담보신탁[*]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그 신탁 수익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신탁 ▪ (대상) 담보신탁의 위탁자[*]를 취득자로 보고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지배·통제하여 부동산을 개발·조성 및 건축하는 경우 ▪ (내용) 직접사용 적용대상에 위탁자를 포함하고, 위탁자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세 감면 적용 	제2조, 제185조 영 제128조
② 공공매입임대 주택 감면 확대(HUG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목적)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 지원 ▪ (대상)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[*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일정규모 이하의 아파트·연립·다세대주택·오피스텔(주거용)·기숙사와 단독주택·다중주택·다가구주택 ▪ (대상자) LH, 지방주택공사 + <u>주택도시보증공사</u> ▪ (감면내용) 취득세 25%·재산세 50% 	제31조 제6항 (2027.12.31.)
③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개인 구입자 감면 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목적) 미분분양 물량 해소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▪ (대상)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[*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, 수도권 외의 지역 소재, 전용면적 85㎡·취득가액 6억원 이하, 사업 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(부담부증여 제외)로 취득(법인·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제외)하는 아파트로서 실제 입주한 기간(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입주한 기간 제외)이 1년 미만인 아파트 ▪ (감면내용) 취득세 최대 50% 감면(법25%+ 조례25%) 	제33조의3 제4항· 제5항 (2026.12.31.)